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출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서식, 특구개발사업내 행위허가의 기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구성·선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서식 등(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함

나. 간이공작물의 범위(안 제3조)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범위를 정함

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대행신청서(안 제4조 및 제5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라.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기준 등(안 제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시의 고시 내용을 정함

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변경 승인신청서(안 제7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함

바.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안 제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 등(안 제9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사업행자에게 발급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등)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지정 신청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작물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업시행자 변경 등) ①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2.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연계·조정에 필요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2. 도심융합특구의 시행·관리·운영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시·도지사등이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선임·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심융합특구 지정 [] 신청서 []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인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 기관	기관명(기관장명)
	주 소 (전화번호 :)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열람기간 또는 공청회 개최일
	특구개발사업·연계사업(예정)사업시행자 제안 여부

도심 융합 특구 기본 계획	특구의 명칭	특구의 위치	
	특구의 면적	조 성 기 간	
	특구개발사업 개 요	사업별 위치·면적·시행자·시행기간	
	특구연계사업 개 요	사업별 위치·면적·시행자·시행기간	
	연 계 지 정 정 책 구 역 등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면적(m ²)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적(m ²)	
	주 요 기 반 시 설 계 획	시 설 별	
		개 요	
	인구수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기업입주계획
재원조달방법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기타: 억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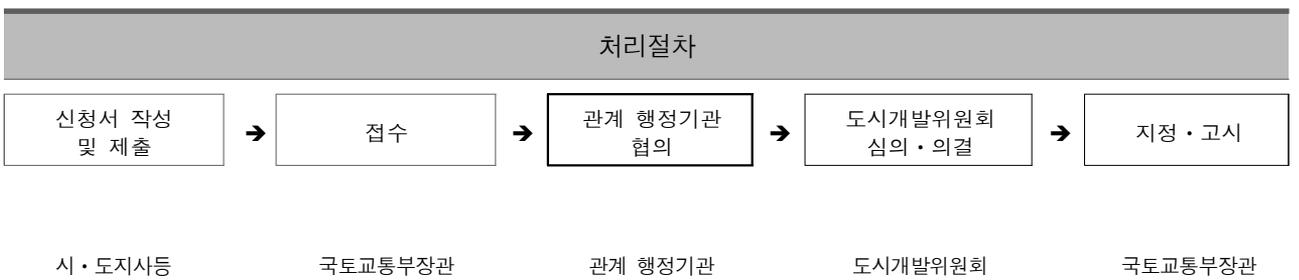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법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교육·복지·문화·체육·주거시설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상호 연계방안 20.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2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p>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p>	<p>지적도 및 임야도</p>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인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지역	사업명칭	시행면적	m ²	
	위 치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 (천원)	(총액) 천 원 국내자본 천 원	외국자본 천 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30일 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신청지역	사업명칭	사업시행면적 m²	
	위 치		
개발사업 대행계획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사업시행기간 ~	
	자금조달계획 (천원)	총 액	국내자본 외국자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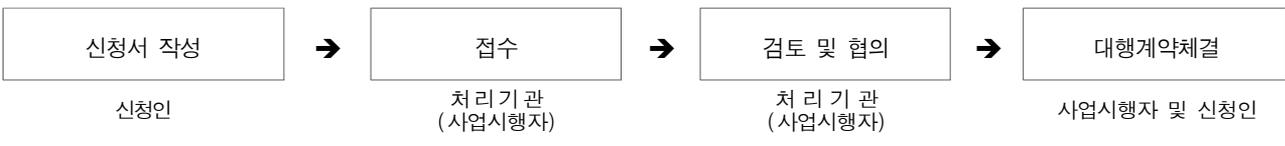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방법				시행시행기간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m ²)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m ²)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입주기업 수				수용인구 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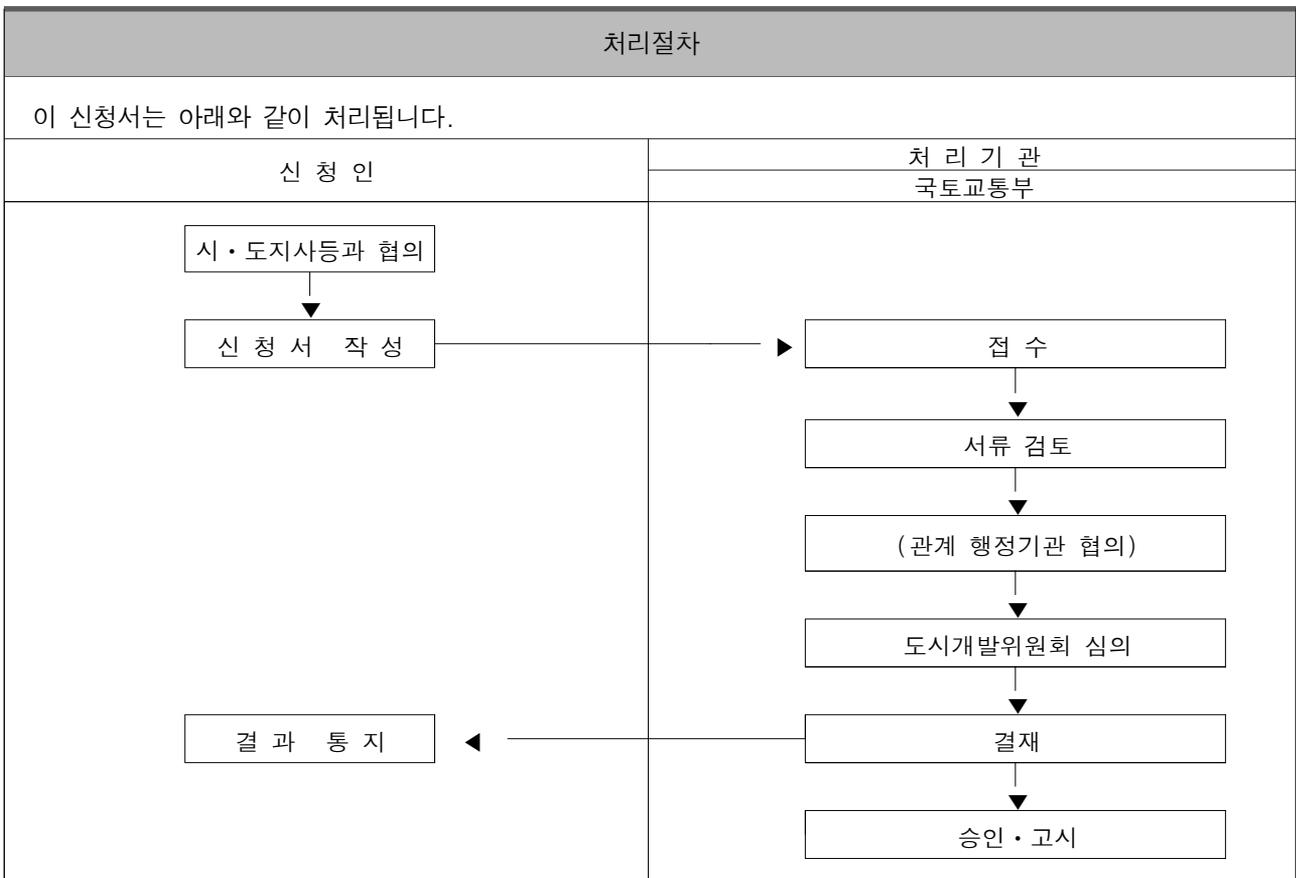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위치도) 및 면적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6.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7.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9.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12. 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등과의 협의내용15.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면적					m ²			m ²		
사업시행기간					~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m ²)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m ²)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입주기업수										
수용인구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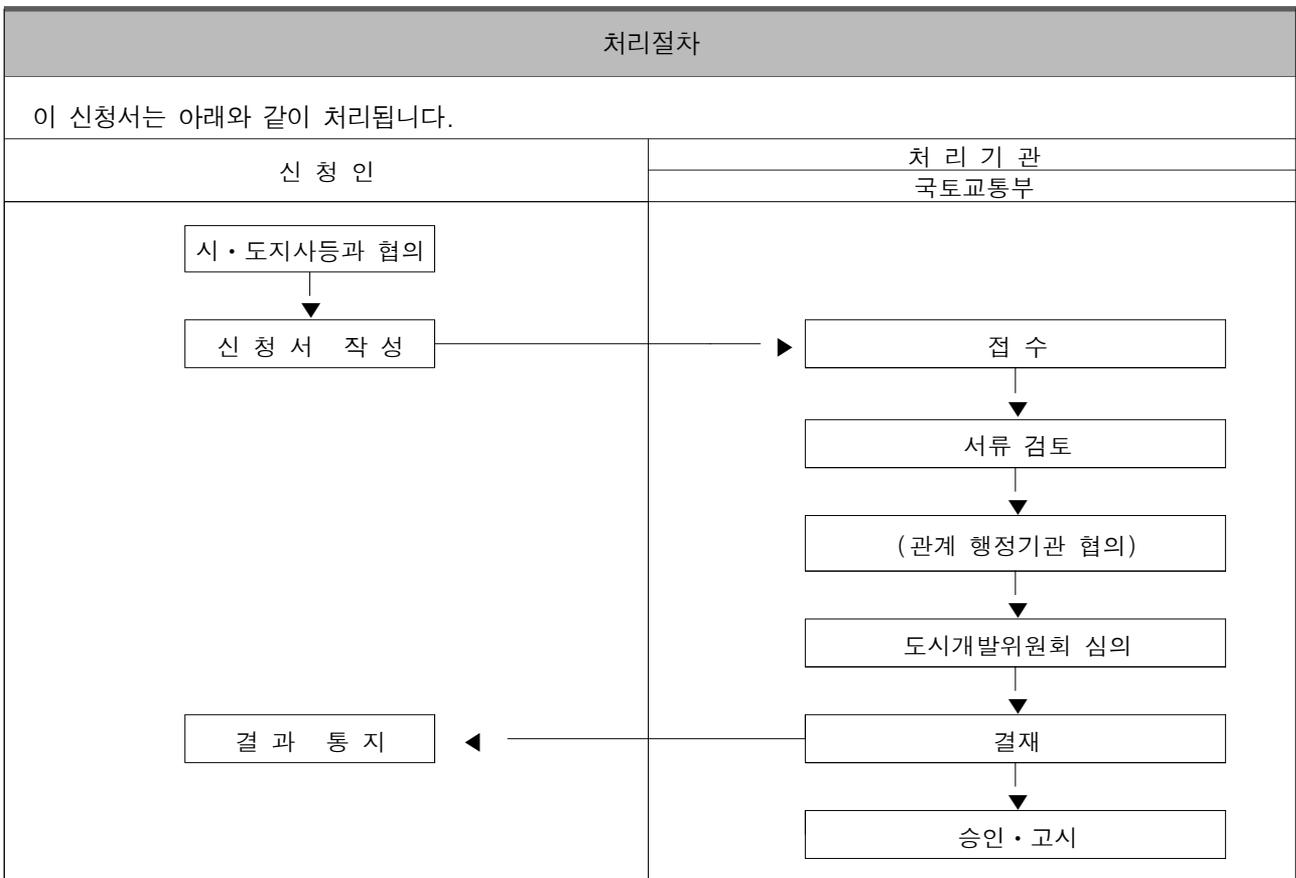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위치도) 및 면적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6.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7.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9.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12. 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등과의 협의내용15.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심융합특구 준공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

접수

준공 검사

준공인가확인증
수령

결재

공고



준공인가 확인증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준공내용	사업 명칭	
	사업시행지역 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기간	m ²
	준공 인가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31